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 ~ 9



제1533호

2009. 4. 13.

조 례

제79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79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79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79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80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80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80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80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80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80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806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제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80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0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0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81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81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3
제81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81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81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81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45
제81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중 랑 구

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인용법령명에 낫표를 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로 하고,
- 나.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하며, “(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
위)”를 “(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위“라 한다)”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9조 제1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하고, “(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위)”)를 “(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위”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서장 명칭 변경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맞춰 해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 인용법령명에 낫표를 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로 개정하고,
- 나. 제4조 제2호와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하고,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 다. 제7호 중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을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 등
으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4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를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로 한다.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3조를 “「서울특별시중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한다.

제4호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호 중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을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으로,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를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 조례의 목적을 현실성 있게 표현하며 구민회관의 위치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나. 제1조(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
- 다. 제2조 중 “이를 따로 고시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설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이를 따로 고시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중랑구청의 위치를 현재의 지번에 맞도록 지번을 정정하고, 괄호안에 새주소를 병기하며,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하고,
- 나.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 다. 제2조 중 “662번지 1호”를 “662번지(봉화산길 179)”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799호

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 중 “662번지 1호”를 “662번지(봉화산길 179)”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 법규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로 하고,
- 나.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개정하고, “제7조제4항”을
“제7조제6항”으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00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을“「지방공무원법」”으로 개정하고, “제7조제4항”
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구민의 날 지정 목적이 잘 나타나도록 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기를 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1조(목적)을 구민의 날 지정과 운영에 대해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이 조례는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날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로 한다.

제1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근거조항을 변경하며,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위명을 현행 직위명에 맞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2항 중 “동행정계장”을 “동행정담당주사”로
개정하고,
- 나. 제15조 (위원회수당) 중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을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행정계장”을 “동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 중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을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민방위통대장복장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해당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인용 법령문에 낱표와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2조 (지급대상) 중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 나. 제3조 (지급기준)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민방위통대장복장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민방위통대장복장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민방위통대장복장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쓰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1조(목적)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나.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설립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등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제2조(범위)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을 추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설립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등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 현행 구청장의 승인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를 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20조 (대행사업) 제2항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승인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대행사업) 제2항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승인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구에서 발행하는 구정소식지의 내용에 구정뿐만 아니라 의회의 소식도 포함하도록 하여 구민에게 구의회의 활동모습을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소식지 발행주관 부서장을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게 기획홍보과장으로 하며, 어문규정에 맞게 제명을 띄어 쓰는 것이 필요.

2. 주요골자

- 가. 제1조 (목적) 중 “구정”을 “구정 및 의회의 소식”으로 개정하고,
- 나. 제5조 (주관) 중 “문화체육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정”을 “구정 및 의회의 소식”으로 한다.

제5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 나. 입주신청자의 신청자격을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입주대상기업 신청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다. 조례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 」)를 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하고,
- 나. 제3조(적용범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3”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로 하며,
- 다. 입주대상기업의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신청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4조(입주신청자) 중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고,
- 라. 제5조제2항(지원등)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3”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로 한다.

제4조 중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고,

제5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 나. 조례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며, 인용 법령명에 낫표(「 」)를 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
- 나.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함.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8조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중랑구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중랑구의 교육경비 및 장학금 지급 등 교육지원 방향 설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학교 유치·육성, 교육시설 개선, 지역 인재 양성 및 장학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교육발전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교육환경 개선,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협의·조정 및 자문

나.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구청장·구의회 의장·동부교육청 교육장을 고문으로, 시·구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

- 운영분과 및 각급 교육기관별 분과위원회를 17인 이내로 구성
- 분과위원회 별 위원장 1, 부위원장 1, 간사 1

라. 의견 청취 (안 제9조)

-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 및 자료 수집
-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랑구의 교육경비 및 장학금 지급 등 교육지원 방향 설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육성·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을 겸임 한다.

③ 구청장, 구의회 의장,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고문으로 하고, 시의원, 구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시 교육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
2. 각급 교육기관별(어린이집·유치원, 초, 중, 고교) 대표(원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3.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다만,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기타 교육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 ⑥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운영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 및 각급 교육기관별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③ 운영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동차와 관련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함.

진 출 · 입 로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점 용 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0 를 곱한 금액

나. 버스카드판매대가 가로가판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문구(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함.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 제5항제9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 제2항 및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로,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부령”을 각각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에서 규정한”을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4호란 중 진출·입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란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로 한다.

진출·입로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0 를 곱한 금액

별표 2의 제목 중 “과태료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제1호란 중 “사용하는자”를 “사용하는 자”로 “법 제86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1호”로 “제공미터”를 각각 “㎡”로 하고, 제2호란 중 “한후”를 “한 후”

로 “제출한자”를 “제출한 자”로 “법 제86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101조 제1항제3호”로 하고, **제3호란 중** “시행한자”를 “시행한 자”로 “법 제86조의2 제1항제4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4호란 중** “법 제86조의2 제1항제1의2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2호”로, “제곱미터”를 각각 “m²”로 하고, **제5호란 중** “아니한자”를 “아니한 자”로 “법 제86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101조제2항제2호”로 하며, **제6호란 중** “도로점용허가기간”을 “도로점용허가 기간”으로 “법 제86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101조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 근거 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근거 조항 변경과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 」)를 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목적) 중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인 도로법 제22조를 “제20조”로, 제64조를 “제76”조로 하고,
- 나.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제1항 중 법 제64조를 “제76조”로 하며,
- 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1항 중 법 제78조를 “제90조”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22조”와 “법 제64조”를 “「도로법」 제20조”와 “법 제76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64조”를 “법 제76조”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78조”를 “법 제90조”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근거 조항 변경과 오류 부분을 바로 잡으며,
- 나.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 」)를 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목적) 중 인용 법률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 나. 제2조(정의) 제1호와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 관리법」”과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 다. 제6조(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리조례와 지방공기업법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 관리법」”과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리조례”와 “지방공기업법”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1. 제정이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건강에 이로운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다.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자문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함.
- 라.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마. 건강도시 생활터별, 분야별 건강도시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바.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15인이내(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보건소장)
 - 위 원 : 주민 또는 민간단체, 전문가, 구의원, 관련 국장 등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사. 위원의 해촉 : 부패연루, 품위손상, 장기치료 등의 경우
- 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자. 주민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해 의견 제시 가능함.
- 차.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카. 구청장은 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기술의 교류나 홍보활동 등에 협력해야 함.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라 함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주민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5.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생활터별, 분야별 실무적인 협조와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협의회 구성과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건강도시 관련 국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지역주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등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회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지원된 사업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위원회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과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응해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다음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기술의 교류나 홍보 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구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청정공원 지정 대상을 봉화산 근린공원내 봉수대 공원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구 관내 모든 도시공원 및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구민과 청소년들
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여 주고, 공원내에서 음주·흡연행위를 금지
하도록 계도활동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확보

2. 주요골자

- 가. 제1조(목적) 중 「건강 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 나. 제2조(대상공원의 지정) 제1항을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관내 모든
공원을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다. 제3조(계도) 제2항을 구청장은 필요시 관련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을 지정
하여 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로 개정
- 라. 제5조(예산의 지원)을 구청장은 필요시 위탁한 민간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중 「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공원의 지정)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관내 모든 공원을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계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필요시 관련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필요시 위탁한 민간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물자를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